

---

第5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2年4月14日(火) 午後3時

場所 內務委員會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2面

1.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2面

---

(15時 20分 開議)

○委員長 鞠應好;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어제 本議會 開會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內務委員會는 議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우선 第1次 會議를 오늘 열기로 하고, 第2次 會議는 本會議가 있는 날 17日 會議 마치면서 第2次 會議를 열도록 아까 議論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여러가지公私多忙하실텐데도 오늘 우리 內務委員會會議 때문에 일부러 하루의 일과를 버리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엇그제 座談會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특히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는 條例特委 委員들이 많이 계시는데 金泰雄 委員長

님과 李丁煥 委員님, 李迎春 委員님 세 분이 그 동안 條例特  
委 活動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의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人事  
를 대신하겠습니다.

---

o 報告事項

○委員長 鞠應好; 案件 上程에 앞서서 먼저 우리 內務委員  
會 報告할 事項이 있기 때문에 擔當職員으로 하여금 報告토  
록 하겠습니다.

○洪淳化;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2年 4月 7日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地方別  
定職分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2年 4月 10日  
議長으로부터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23分)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本 條例案의 提出者인 市長을 代理하여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여러분께 어제도 양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韓金鍾  
消防本部長이 季氏喪을 당해서 喪主 立場이기 때문에 오늘  
만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다고 어제 사전에 届出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提案說明토록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받습니다. 설명하시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防護課長입니다.

우선 提案說明에 앞서서, 本部長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報告를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만 擔當課長인 제가 報告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提案說明에 앞서서, 먼저 서울市義勇消防隊 現況을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義勇消防隊는 消防法 63條 및 서울市 條例 2720號에 근거를 두고, 현재 14개 消防署에 消防署 單位로 설치되어 男子 隊員 1,240名, 婦女隊員 980名 都合 2,240名이 活動하고 있습니다.

活動要領은 非常勤으로써 消防上 必要時 消防署長의 業務를 補佐하고 있습니다. 男子隊員은 火災鎮壓 및 豫防活動을 補佐하고, 婦女隊員은 住民의 日常生活 속에서 불조심 生活化 弘報 및 市政業務 支援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昨年度 活動實績으로써 年 1,286回 4萬 1,732名이 動員되어 火災鎮壓支援, 消防通路確保, 불조심 캠페인 및 其他 市政業務支援活動을 展開하였습니다. 今年에는 出動 및 教育手當 1億 5,800萬원을 包含해서 1億 8,900萬원의 豫算을 確保하여 活動에 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改正條例案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改正事由입니다. 91年度 12月 14日 法律 第4416號로 改正 公布된 消防法 第3條에 依據해서 消防業務가 종전에 市·郡에서 特別市·直轄市 및 道の 廣域消防體制로 移管改編된 데 따른 關聯條例의 改正事項으로써, 義勇消防隊를 運營하여 오던 중 그 동안의 未備 事項을 補完하고 運營을 活性化하여 隊員의 士氣 振作을 圖謀하기 위한.....

(「개별 油印物 주신 것 없습니까? 改正案」하는 委員 있음)

(「지금 報告드리는 것이 油印物, 우리에게 깔아준 것 없어요? 提示한 것 없어요」하는 委員 있음)

○防護課長 安甲壽; 改正條例案 1페이지에 改正事由가 간단히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說明하시는 요령은 이렇게 해 주세요. 油印物을 드린 이상은 說明을 油印物에 根據를 두고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 委員님들이 알아 듣는데 혼동이 없습니다. 油印物을 안 만들었다면 口頭로 해도 되는데 油印物을 만들어서 일껏 配付해 놓고 油印物과 동떨어진 말로 하면 油印物의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지금 委員님들이 그것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金容一 委員; 왜냐 하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引上問題 1億 얼마라고 하는 過程도 油印物이 없이 지나가는 過程에 우리가 뭐 뭐 라도 알고 있으면 짚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口頭로 얘기하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겁니다.

○金泰雄 委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問題視 될것은 油印物에 안 실는 모양이에요. 말로써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防護課長 安甲壽; 그건 아닙니다.

○委員長 鞠應好; 說明하세요.

○防護課長 安甲壽; 네, 그러면 改正事由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改正事由는 義勇消防隊 油印物 1페이지에 있습니다.

義勇消防隊運營의 活性化 및 士氣振作을 위한 制度的인 未

備點을 補完하여 義勇消防隊運營體制를 整備코자 하는 改正事由입니다. 이것은 內務部條例準則에 依據 全文改正이 되겠습니다.

主要骨子を 報告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は 義勇消防隊 官署標識 및 懸板規定新設 件입니다. 현재 行政指示로 運營하던 義勇消防隊 標識와 懸板의 規格을 規定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一般隊員 任用權者 調整입니다.

이것은 義勇消防隊長의 推薦에 의해서 消防署長을 經由해서 市長이 任用하던 것을 單位義勇消防隊長 推薦으로 消防署長이 바로 任用할 수 있도록 이렇게 改正됩니다.

다음은 義勇消防隊의 檢閲強化, 이것은 年 1회 이상이었던 것을 年 2회 이상으로 調整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出動手當 引上입니다. 우선 消防手 1號俸 月額으로 30으로 나눈 金額의 68%였던 것이 이것을 70%로 2% 增額하는 改正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 등 新設입니다. 消防署長은 義勇消防隊와 직접 關聯이 있는 業務遂行 및 地域活動에 필요한 經費支援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義勇消防隊聯合會 構成 및 聯合會活動經費 支援規定 新設입니다. 이 內容은 義勇消防隊 相互間의 消防業務 情報, 隊員의 福祉向上을 圖謀코자 地域消防行政 發展을 위한 聯合會 構成 및 그 活動經費支援 內容規定입니다.

(「委員長님, 지금 報告하시기 전에 提案說明 하시다가 이것으로 대체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하는 委員 있음)

첫째, 1991年 12月 14日 法律 第4419號로 改正 公布된 消

防法 第3條에 依據 消防業務가 從前에 市·郡에서 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廣域消防體制로 移管 改編된데 따른 關聯條例의 改正事項으로서, 義勇消防隊를 運營하여 오던 그 동안의 未備事項을 補完하여 運營을 活性化하고 隊員의 士氣振作을 圖謀하기 위한 制度的인 未備點을 補完하는데 있습니다. 內務部의 改正準則에 依據 從前의 27個條를 36個條로 늘리는 등 全文을 손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改正骨子を 말씀드리는 순서로 엮었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提案說明 다 끝난 거예요?

다음은 兪炳敦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炳敦;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配付해 드린 油印物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會 回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提案說明의 要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는 義勇消防隊 運營의 活性化 및 士氣振作을 위한 제도적인 未備點을 補完하여 義勇消防隊 運營體制를 整備하고자 함. 內務部條例準則에 依據 全文 改正을 하였습니다.

主要骨子是 義勇消防隊 官署標識 및 懸板의 規格을 案 4條에 새로이 規定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一般隊員 任用權을 調整을 해서 지금까지 單位隊長 推薦, 消防署長 經由, 市長任用하던 것을 單位隊長 推薦, 消防署長 任用하도록 案 10條에 改正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義勇消防隊의 檢閱을 強化하여서 年 1回 檢閱하

던 것을 年 2回 檢閱하는 것으로 改正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案 23條에 義勇消防隊員의 出動手當을 引上을 했습니다. 消防士 1號俸 月額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68%를 지금까지 주어 왔습니다. 이것을 70%로 해서 2% 增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 費用을 案 24條에 新設을 했습니다. 消防署長은 義勇消防隊와 직접 關聯이 있는 業務 遂行 및 地域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는 規定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義勇消防隊聯合會 構成 및 聯合會活動經費 支援 規定을 新設했습니다.

關聯法規는 現行消防法은 第63條 내지 第63條고, 7月 1日부터 施行되는 改正消防法에는 第86條 내지 第91條가 關聯根據法規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번째, 改正案의 概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條例構成은 本文 27條, 附則 4條에서 改正條例는 本文 36條, 附則 5條로 構成되었습니다.

提案된 背景은 現行消防法이 92年 12月 14日 全文改正 公布되어 92年 7月 1日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內務部에서 義勇消防隊設置條例準則이 示達되고 이에 따라 本 條例改正案을 提案하게 된 것입니다.

從前에 없던 新設規定은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規定, 義勇消防隊聯合會 構成 및 聯合會活動經費 支援 規定이 從前 條例에 없던 規定이 되겠습니다. 參考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改正消防法의 主要內容은 改正法 第3條에 지금까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로 二元化되어 있던 消防事務를 度

域地方自治團體의 事務로 一元化하였다는 것이 改正消防法의 가장 큰 特徵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檢討意見을 報告드리겠습니다.

가. 改正案의 主要骨子 中 義勇消防隊 官署標識 및 懸板規格 規定, 一般隊員의 任用權 調整, 義勇消防隊의 檢閱強化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意見이 없습니다.

나. 新設規定 中 案 第24條의 活動費 補助規定은 義勇消防隊員이 義勇消防隊와 直接關聯이 있는 業務를 遂行할 경우에 그 必要經費를 支援할 수 있는 規定으로, 實費補償次元에서 支援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됩니다.

다. 義勇消防隊聯合會에 대한 規定입니다.

첫째, 義勇隊 相互間의 消防業務 情報交換, 隊員의 福祉向上, 親睦圖謀 등을 위하여 聯合會를 構成할 必要性이 있는가와,

둘째, 聯合會의 經費支援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檢討한 바, 義勇消防隊聯合會는 83年 6月 13日 內務部 防護 2083-2481號 義勇消防隊聯合會 結成指針에 依據, 改正條例 案과 같은 趣旨로 結成되어 活動 中인 것을 條例上에 明文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를 認定한다면 豫算의 範圍 內에서 그 所要 經費는 支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92年度 豫算에 月 50萬원씩 支援하는 것으로 豫算에 計上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 法律4419號 改正消防法의 施行時期는 附則 第1條에 92年 7月 1日로 規定되어 있어 現時點에서는 法律 2802號인 現行消防法이 有效합니다.

義勇消防隊 設置根據條文이 改正消防法과 現行消防法이 相

異하여 改正條例案 附則 第5條에 消防法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規定을 두어, 改正消防法이 施行되는 92年 7月1日부터는 第1條 目的 중 "消防法 第63條 내지 第68條"는 "消防法 第86條 내지 第91條"로 改正된 것으로 본다는 經過規定을 두었습니다.

現行條例와 改正條例의 차이가 義勇消防隊聯合會 외에는 別無하고, 聯合會는 83年 6月 13日 內務部指針에 依據 既已 結成되어 活動중에 있으므로, 改正條例의 施行時期를 改正消防法의 發效時期 一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第1條 目的 중 義消隊의 根據規定도 改正法律의 條文을 引用하고 附則 第5條를 削除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됩니다.

마. 改正條例案 第31條는 서울特別市 義勇消防隊聯合會 構成規定임에도, 改正條例案 第31條第1項 後段에 "地域消防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서울特別市の 行政區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서울特別市の 行政區域 單位로 消防隊聯合會를 構成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는 바, 서울特別市の 行政區域單位라면 1次的으로 區를 聯想하게 되고 區 單位로 義消隊聯合會를 構成할 수 있는 것으로 誤解될 素地가 있으므로 條文整理를 할 必要가 있다고 思料됩니다.

바. 現行條例 第27條, 改正條例 第36條는 施行規則에 關한 規定을 두어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고 規定하였으므로 條例施行上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宜當 施行規則으로 定하여야 할 것임에도, 改正案 第15條 隊員의 身分證, 第18條 服制, 第30條 災害補償請求 등 規則으로 定하여야 할 身分證의 書式紙質, 크기, 服裝 . 帽子 . 구두, 標識章의 規格 . 圖案 및 災害補償請求書의 書式 等 細細한 事項까지 條例로 規定함은 行政의 彈力性을 缺如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은 마땅히 規則으로 規定하도록 委任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사. 改正條例案에는 第23條 出動手當, 第26條 療養手當, 第27條 障害手當, 第28條 葬祭補償, 第29條 遺族補償 등이 規定되어 있는 바, 이는 現行條例에도 規定되어 있는 事項으로 出動手當을 1人 1회에 地方消防士 9級 1號俸 俸給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68%에서 70%로 2% 上向調整하고, 遺族補償의 경우에는 現行條例에 地方消防士 2號俸 俸給의 3年分 範圍內를 改正案 第29條에는 地方消防士 4號俸 俸給額의 3年分 範圍內로 規定하여, 基準號俸을 2號俸 引上한 外에는 其他 補償은 現行과 같이 하였으나, 人間 生命의 尊嚴性은 公務員이나 一般市民이나 義勇消防隊員이나 差等이 있을 수 없고, 火災鎮壓이라는 똑같은 業務를 遂行 중에 입은 災害에 대한 補償에 差異가 있음은 納得할 수 없는 事項입니다. 義勇消防隊員이 災害를 입었을 때의 補償 基準이 한결같이 地方消防士의 俸給額을 基準으로 算定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公務員報酬規程 第4條1號 地方公務員報酬規程 第3條1號에서 "補酬는 俸給과 其他 各種手當을 合算한 金額"으로 明示되었고, 消防公務員이 災害를 입었을 때 適用을 받는 公務員 年金法을 보면, 第52條의 障害補償金의 基準, 同法 第61條의 遺族補償의 基準 同法 第41條의2 死亡弔慰金의 基準이 한결같이 俸給額을 基準으로 한 것이 아니라 報酬額을 基準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改正案 第27條 關聯 別表 5-1의 身體障害 等 級別 障害補償表 중 補償額의 基準을 包含하여, 改正條例案도 義消隊員의 障害 補償의 基準을 報酬額으로 上向 統一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이 件은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 一般行政分野小委員會에 舉論된 바가 있습니다.

아, 內務部의 條例準則은 準則으로 끝나는 것이므로, 이를 示達받은 關係執行部署에서는 이를 當該 自治團體의 實情에 맞도록 成案하여야 할 것임에도, 內務部 條例準則을 機械적으로 移記한 部分이 발견됨을 指摘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參考事項으로 '92年度 豫算에 義消隊 激勵費가 600萬원, 義消隊 活動手當이 1億 5,840萬원, 義消隊 體育大會費가 1,230萬원, 計 1億 7170萬원으로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出動手當, 葬祭補償, 療養補償 등에 대한 代案을 提示한 것입니다. 23條의 出動手當이 1號俸 俸給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70%로 했는데 이것을 30으로 나눈 金額 100%를 다하면 어떠냐 하는 意見입니다. 그 옆에 金額算出 豫示가 있는데 改正案 28萬 2,000원 나누기 30곱하기 0.7은 消防士 1號俸이 아니고 4號俸을 基準으로 한 것입니다. 消防士 1號俸은 24萬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580원이 되고, 이것을 30으로 나눈 金額 100을 다 준다면 9,4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療養補償도 지금 현재 80%의 5배에 該當하는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고 26條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實 所要된 金額을 支給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消防公務員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實 所要된 金額을 支給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葬祭補償도 公務員年金法上的 報酬月額을 支給하자. 지금 현재 改正案에는 俸給額을 基準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條의 遺族補償도 같은 趣旨입니다.

關係法수는 參考로 해 주시고, 12페이지까지는 省略을 하고 13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장은 公무

원연금기여금조건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03, 04사이에 과란 줄을 쳐 놓았습니다. 04가 地方消防士 4號俸입니다. 俸給 月額은 28萬 2,000원입니다. 그런데 年金法에서 받는 報酬月額은 1年 未滿이 48萬 4,100원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20萬 2,100원의 差異가 납니다. 이것을 參考하시고 審査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質疑答辯 順序로서 質疑하실 委員님들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容一 委員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金容一 委員; 金容一 委員입니다. 먼저 義勇消防隊의 活動範圍, 지금 현재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현재 消防隊員과의 다른 점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地域에서 본다면 底邊에 消防署가 消防隊員이 하시고 出動時에는 消防署 隊員들만 出動하는 것만 봤습니다만, 그 以外の 義勇消防隊의 活動範圍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십시오.

(「追加하겠습니다. 婦女消防隊도 꼭 必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鞠應好; 네 그러니까 金容一 委員님하고 吳委員님하고 두분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義勇消防隊의 現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왜 必要한 것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婦女消防隊問題, 그 事項을 答辯 겸 說明을 해 보세요.

○消防課長 安甲壽; 아까도 報告를 드리다 말았습시다만, 義勇消防隊 運營 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現況은 지금 현재 서울市內 14個 消防署에 2,240名, 여기에 男子隊員이 1,240名인데 이것은 일개 署에 署單位로 男子隊員이 90名, 婦女隊員이 70名으로 區分해서 設置가 되어 있습니다. 任務는 역시 義勇消防隊員은 非常勤입니다. 非常勤이기 때문에 消防上 必要時 消防署長의 業務를 補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男子隊員은 消防活動을 補佐하고, 예를 들어서 火災現場에 저희가 出動을 해 보면 住民들이나 委員님들이 보시기에도 消防官은 特秀한 服裝을 입었기 때문에 전부 區分이 됩니다만, 一般市民인지 또는 義勇消防隊員인지 區分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孔德洞에서 火災가 發生했을 때 住宅街의 골목에 상당히 駐車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初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이것을 消防官의 第1次 出動隊員은 人員도 그렇고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延長하랴, 車輛을 옮기랴, 여러 가지 미끄러움을 防止하랴, 이런 일들로 인해 人員이 상당히 딸린 實情인데, 제가 용산에 署長으로 있을 때입니다. 義勇消防隊員들이, 그 地域에 사는 그 분들이 전부 와서 집집마다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住民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各自 자기의 소위 義勇奉公精神이 아니면 절대 不可能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전부 水管도 延長을 하시고, 車 옮기는데 協助도 해 주시고 모든 鎮壓活動에 상당히 도와 주셔서 빨리 救助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消防活動을 男子隊員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平常時에는 義勇消防隊員이라는 籍이 있고, 消防臺帳 名單이 있고 한달에 몇번씩 나와서 點呼를 받거나 訓練을 하거나 教育을 받거나 그

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防護課長 安甲壽; 네, 한달에 한 번씩 義勇消防隊員들이 消防署에 모여서, 隊員들이 召集이 되어서 教育·訓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다가 火災가 나면 義勇消防隊員이 自動적으로 出動하게 되어 있습니까?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저희가 非常連結體制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隊長과의 連結이 되고 또 一部는 事室務도 消防署에 같이 쓰는 데도 있고, 各自가 事務室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기로 連結을 하면 다 隊員까지 連結이 됩니다. 그 地域에 전부 連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活動을 하게 되고, 女子消防官인 경우에는 아니, 女子婦女隊員인 경우에는 역시 住民속에서 전부 다 隊員이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日常生活속에서 전부 불조심 生活을 할 수 있도록 역시 消火器라든가 이런 關係, 한 家庭 消火器 갖추기라든가 이런 關係, 또는 班常會 出張을 해서 啓蒙하는 關係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가만있어요. 뭐 補充...... 지금 說明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들으시고서.....

○防護課長 安甲壽; 네, 그래서 91年度 義勇消防隊 活動實績을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시다만, 昨年같은 경우에는 1,286 個의 4萬 1,732名이 動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消防業務 支援이, 純粹한 消防業務 支援이 그 內容을 火災鎮壓 支援, 또는 教育, 消防通路確保, 駐車啓導, 불조심 캠페인 이런 것들이, 消防業務 支援이 64.4%인 588回 2萬 6,880名이 動員이 되었고, 其他 市政業務 支援은 3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交通秩序캠페인 또는 새마을淸掃, 健全生活캠페인, 35.6% 이렇게 해서 1萬 4,852名이 動員된 바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때는 市政業務에 支援하든 消防業務에 支援하든, 아까 얘기하던 70%가 68%가, 日當을 줍니까? 나오면.....

○防證課長 安甲壽; 네, 나오면 줍니다.

○委員長 鞠應好; 나오면 報酬를 주는군요.

○防護課長 安甲壽; 그런데 그것이 豫算範圍內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計上한 것은 2,240名이 昨年같은 경우에는 日當이 4,700원입니다. 4,700원이 2,240名分에 12달,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혹여 여기에서 저희가 動員된 人員이 實際人員보다는 상당히 많지요. 이렇게 되다 보면 豫算範圍內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班常會 參席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자, 金委員님 質疑해 주시지요.

○金泰雄 委員; 金泰雄 委員입니다. 우선 義勇消防隊가 既已 活動하고 있는 것이 과연 說明처럼 그렇게 活性化 되어서 活動을 하도 있는지 그것을 確認할 바가 아직 없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義勇消防隊가 倭政時代때부터 胎動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54年度 義勇消防隊가 생겨졌고 '58年度 消防法에 의해서 쪽 進行되어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 時節과 지금과의 關係는 엄청난 時差를 가져옵니다. 그때 양동 이로 불 끌 때와 지금 불차가 가서 이렇게 끝때 이런건데 그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다.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아니겠지만 그런걸 느끼고, 그렇다면 이것이 內務部 準則이라고 했는데 內務部는 全國的인 現況에 區分없이 準則을 내린 것이 아닌가, 소위 地方 郡 單位 山間僻地 消防署가 없는

데는 義勇消防隊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은, 直轄市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人力難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과연 어떤 실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分離해서 準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또 한가지는 먼저 있던 것을 이래 저래 고쳐서 條例의 條文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없던, 전에도 婦女隊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人員도 地域隊도 있고 늘리고 그랬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물론 옛날과 달리 物價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出動者에 대한 補助가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聯合會도 構成한다. 聯合會를 構成해야 되는 것인지 또 뭘 補助한다는 것도 한 두 건이 아니고 이래 저래 많은데 과연 根本적으로 義勇消防隊가 必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과연 그 費用을 탄 데다가 더 좋은 데 防護에, 有用한데다 이렇게 調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또한 지금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 대한 執行部の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答辯을 기다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지금 答辯하실 수 있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네.

○委員長 鞠應好; 네, 答辯하시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金泰雄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義勇消防隊가, 消防署가 설치되지 않은 地域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잖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인 境遇에도 火災鎮壓 活動面에서 그렇고, 현재 消防力이 상당히 不足한 實情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地域에 火災가 난다고 해서 全體에 있는 消防署에 消防隊員들이 그 地域 전부 出動할 수는 없습

니다. 이런 關係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大都市의 發展되고 發達된 모든 交通疏通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消防力은 現場에서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關係에 있기 때문에 역시 날로 增加하는 交通滯症 關係도 그렇고, 또 골목길 無斷駐車 關係 또 消防力の 機動性 이런 것들이 상당히 混亂을 겪고 있는 實情입니다. 하기 때문에 現場에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조금 받아야만 火災 鎮壓活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實情입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消防官이 서울市內는 消防官數만 3,601名입니다. 그런데 여기 職員이 다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隔日制로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역시 現場에서는 人員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에 '91年度 火災 發生 現況만 보더라도 消防官署에 豫防活動이 미치지 못하는 一般對象物인 住宅인 경우에만 해도 상당히 많이 火災도 發生하고 一般對象物 火災가 4,850件으로써 全體 5,648件에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제까지의 火災도 아까 제가 봤습니다만, 住宅火災가 역시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고 또 그 地域에 대해서 불조심弘報를 展開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地域에서 各自 生業에 從事하면서 報酬없이 消防에 대해서 義勇奉公精神으로 하지않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高地帶라든가 또는 低所得密集地域 같은 消防車가 不通하는 이런 地域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非常消火裝置를 今年에도 많이 해서 238個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非常時에 가서 住民과 協同으로 消防官이 活用을 해서 불을 끌 수 있는 施設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消防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 地域에 살면서 나와서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狀態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大都市 서울에도 義勇消防隊組織은 반드시 必要하다. 상당히 實績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答辯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答辯 아직 안 끝났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네, 그리고 聯合會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聯合會도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에 14個 消防署, 九老消防署가 열다섯번째 消防所가 됩니다만, 14個 消防署에 隊長이 있고 각 隊長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은 非常勤으로써 消防署長을 補佐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補佐하고 義勇奉公精神으로 하지 않으면 消防에 어떻게 協助할 수 있나, 여러 가지 情報交換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必要하다고 해서 이것이 지난 번에 內務部에서 行政指示로 내려와 이미 構成이 돼 있습니다.

(「構成이 돼 있어요? 하는 委員 있음」)

네, 이미 構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完全히 條例에다 定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專門委員 檢討意見에 대한 政府의 意見. 反對意見이든지, 贊成意見이든지……」 하는 委員 있음)

○金容一 委員; 아니, 거기에 앞서서요, 지금 現在 質問했던 過程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산 消防署에 勤務하시면서 그 당시 高地帶에 불이 났을 때에 婦女子들이 연탄재를 가져 나왔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바로 義勇消防婦女隊員들인지, 꼭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實際로 불이 났을 때 義勇消防隊

女性婦女隊員이 아니라도 갖다 끼얹어 주겠지요. 그 다음 그 뿐만이 아니고 出動하는 1人當 들어가는 費用이 여러가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日當도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거리秩序라고 하는 清掃등 이런 데 나가도 日當을 주는지요? 뿐만 아니라 他 團體는 내가 봤을 때 새마을과 이런 데는 거리秩序 등 많이 動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 살기라든가, 그러한 次元에서 역시 돕고 있는데 消防署에 女性義勇消防隊員이 그렇게 參與를 해야 되는 건지, 周邊에서 우리가 義勇消防隊가 어디서 效率的으로 이 人力을 잘못 쓰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물론 市場繁榮會에 構成되어 있는 것은 흑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現在 서울에서는 必要치 않으니까 이것은 次期에 왜 必要하다는 要旨만 간단 간단 정해가지고 次期會로 모든 與件을 갖춘 다음에 다시 上程을 해서 通過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알아 가지고 處理를 해야지.....

(「이것이 각 區로 組織이 돼 있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防護課長 安甲壽; 消防署別로 돼 있습니다. 消防署는 1個區 2個區 區가 여러 개가 같이 겹쳐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質問 하나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鞠應好; 가만있어요. 지금 質問하신 데에 대한 答辯 다 끝났어요?

○吳基昌 委員; 金容一 委員이 檢討해서 다음 會期에 올리라고 해서 제가 再請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런 要請이 있었습니까?

○金容一 委員; 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하나 하나 아까도 秩序에 課長님이 署長으로 계실 當時부터 얘기를 比喻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우리들이 더 詳細히 알고, 왜 꼭 必要한 거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豫算 단 한 편이라도 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갖지 못하고, 지금 豫算案 上程시켜서 처리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이것을 구성을 해서 거리秩序나 淸掃나 하는 그러한 消防隊員이라고 하면, 義勇消防隊員이라고 하면 女性이든 男性이든 必要치 않지 않겠느냐, 아까도 高地帶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高地帶는 지금 현재 먼것번에도 우리 李永鎬 委員께서 사이카 문제도 얘기했고, 高地帶의 消火栓 問題도 얘기가 됐었던 바도 있습니다. 더 폭넓게 그 周邊에 消火栓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더 敎育시키는 法도 없고 敎育시킨 사람은 막상 市場周邊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불났다고 하면, 거기까지 뛰어갈 리도 없으니까 왜 必要하다고 하는 要旨를 만들어서 次期會때 다시 上程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委員들이 다 아실 수 있는 範圍內에서 理解가 갔을 때 通過시키는 것으로 同意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렸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것은 結論的으로 그런 案이시고요. 우리끼리 議決을 해야 돼지요.

조금 留保하시고, 또 質疑있으시면.....

네, 李迎春 委員 말씀하시지요.

○李迎春 委員; 李迎春 委員입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서울市內에 14個 消防署 있지요. 그 가운데 消防署가 없는 各 區의 義勇消防隊가 設置되어 있습니까?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지금 例를 들어서 恩平區,

西大門區에는 西部消防署가 있습니다. 그래서 義勇消防隊員들은 西大門區 管內에 사는 분 또는 恩平區 管內에 사는 분 이렇게 混合해서 編成이 돼 있습니다.

○李迎春 委員; 아까 말씀 중에 義勇消防隊員들에 대한 訓練을 月 1回 教育을 시키고 있다고.....

○防護課長 安甲壽; 네, 月 1回 隊長 責任下에 4時間씩.....

○李迎春 委員; 그 教育內容 中에는 火災鎮壓 外에 消防豫防 또 우리 住民들의 火災 豫防에 대한 日常生活에 대한 모든 教育도 包含하고 있습니까?

○防護課長 安甲壽; 네, 包含하고 있습니다.

○李迎春 委員; 同僚委員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意味에서 이 問題를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實質的으로 義勇消防隊員들이 火災가 發生할 時에 꼭 火災에 主 業務로서 火災鎮壓을 하는 일이라고만 보지 말고, 消防要員들이 火災鎮壓하는 데서 그 周圍에서 소위 火災鎮壓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霧圍氣 造成과 環境造成을 해주는데 큰 役割을 하는 것, 또 平常時에도 課長님께서 얘기한 대로 月 1회에 여러 가지 消防豫防 教育과 또 豫防에 대한 住民의 生活化를 위한 住民參與라는 意味에서 본다면 저는 義勇消防隊에 대한 意味를 그렇게 縮小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義勇消防隊 要員들의 지원하는 要件이라고 할까 이것을 보면은 그 管轄區域에서 安定된 住民生活을 하면서 健全한 精神과, 生活을 하고 있으면서 더욱이 그 地域을 위해서 奉仕活動하려고 하는 그러한 奉仕精神이 강한 사람들도 構成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規定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제까지 義勇消防隊를 設置하면서 活用해 왔던 이러한 條

예를 특별히 條例에 대한 改正이 필요없다는 지금 實費問題와, 여러 가지 改正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問題에 대해서는 必要性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지금 必要性에 의해서 이 條例가 運營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次元에서 住民和合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民主黨 野黨 立場에서 이것도 하나의 官邊團體로서 이번 選舉를 통해서 굉장히 疑懼心을 가지고 活動內容을 봤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 冠岳區에 義勇消防隊長이라는 사람이 저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平素에 活動하는 것 火災豫防에 대해서 늘 조바심 가지고 地域住民과 對話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義勇消防隊에 대한 視角을, 보는 視角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次元에서 肯定的인 面에서 이번 改正案에 대해서 檢討를 해 주십사 하는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鞠應好; 答辯을 要請할 事項은 아니고요. 또 아까 朴禧柱 委員님 뭐 없어요?

○金泰雄 委員;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대한 反對意見 있으면 答辯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셨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네, 아직 안 드렸습니다.

○金泰雄 委員;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 대한 執行部の 意見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다 檢討해 본 것도 아닌데 專門委員이 專門的으로 檢討를 했을 것 아닙니까, 執行部の 意見을 들어 과연 妥當한가 들어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委員님들 말씀과 專門委員의 檢討事項 綜合해서 제가 이렇게 結論을 내려보지요. 지금 改正消防法 施行날짜가 7月 1日인데 7月 1日까지는 현재 改正前의 消防法이 그대로 效力發生을 하고 있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條例를 만든다 하더라도 改正消防法이 發效되는 時點에 함께 條例 施行이 되겠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條例를 만든다 하더라도 改正消防法이 發效되는 時點에 함께 條例가 施行이 되겠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 前에 條例를 施行하려고 하는 意圖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첫째, 급할 것이 없고, 두번째는 內務部에서 準則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過去의 惰性에 의해서 機械的으로 그대로 遵守하여야 된다고, 비록 비위에 맞지 않는 事項이 있더라도 內務部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準則대로 한다는 精神에서 만들어 立案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特別市の 실정에 맞게 相當한 部分을 손을 대서 우리 마음에 맞게 立案이 된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對答해 보세요.

○防護課長 安甲壽; 거기에 대해서는 內務部에서 準則案을 全國에 統一을 기한 政策事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事項이 衡平을 잃고 地方이나 都市가 어떤 確實하지 않게 準則이 내려지지 않은 法에 根據하지 않는 것이 優位에 올라간다는가 하면 衡平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의 實情에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手當關係 같은 것도 委員님들께서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하루

나가서 벌면 4萬 5,000원 받는 데 그 사람들은各自 義勇奉公 정신에서 生業에 從事하다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5,500원만 주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全體 全國적으로 衡平에 맞아야 되고 地方이나 都市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委員長 鞠應好; 그것은 防護課長께서 手當問題를 例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市民負擔이 되는 事項이니까 주어야 된다면 그 사람도 하나의 市民이니까 相當額을 주어야 한다는 問題가 나오고 또 그렇게 라도 해서 써야 할 것이냐, 안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別問題이로되, 이 條例案을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全國적으로 統一을 기해야 되고 劃一化되고, 均一化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地方自治라고 하는 問題하고는 正反對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地方實情에 맞게 하기 위해서 地方自治를 하는 것이오. 地方議會를 껍데기로 알고 全國적으로 統一해야 하니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하면 우선 消防本部의 課長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 머리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돼요. 國家에서 均一하게 하던 것을 各 地域 地方 實情에 맞게 하기 위해서 義勇消防業務도 그렇게 地方的으로 分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번에 改正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모든 行政이 그 地方實情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 놓는 것이 이것이 地方自治예요. 그래서 地方自治하는 議會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時代錯誤지요. 그건 18世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죄송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리고 또 하나는 內務部에서 어떠한 專門家들이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지만, 아까 專門委員이 指摘한 대로 적어도 130명이 모여앉아서 만드

는 條例案에다가 무슨 書式이 어떻게 하고, 徽章이 어떻게 하고, 標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規定하라고 準則이 돼 있  
다니 納得하기 어려운 準則이에요. 그러한 準則은 우리 地方  
議會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施行細則이나, 또는  
施行過程에서 단추를 어떻게 끼워라, 핀을 어떻게 끼워라 이  
것은 할 일로되 그것이 地方議員들이, 10萬 선량들이 와서  
할 일 없어서 단추를 어떻게 끼워라, 徽章을 어떻게 해라 하  
는 얘기를 條例에다 만든다는 얘지요? 그러한 準則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勸諭을 하고  
그러한 것은 施行細則에다 넣어서 또는 施行指針에다 넣어  
서 만들고, 굵직굵직하고 根本적인 것 또 서울 實情에 맞는  
것 또는 서울 實情에 市民負擔이 되기 때문에 報酬 같은 것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一年에 한 번만 불러서 하루值라  
도 제대로 줘야 된다고 하는 問題도 나오고 이러한 角度에  
서 條例案을 全面的으로 다시 成案을 하시오.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시 成案을 해서 다음 會期에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要約을 하면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7月 1日부터 發效  
할 것이니까 그 안에 臨時會가 두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會期에 올려도 늦질 않고, 두번째는 우리 實情에 맞는  
그러한 內容을 加味시켜서 所信대로 成案을 해 보시고, 세번  
째는 內務部 準則이라고 해서 無條件 다 그대로 順應할 必要  
가 없어요. 이건 準則이니까 內務部에서 너희들 알아서 너희  
머리가 없으면 이걸로 해라는 것이 準則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 準則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좋으면 우리 머리대로 만  
드는 것이 條例案입니다. 그러니까 內務部 準則을 無條件 遵

守한다는 過去의 思考方式을 버리고 우리 消防官의 哲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러한 세 가지 理由에 의해서 다음 會期에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세요.

○金容一 委員; 地方이라면 地方에 대한 消防署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義勇消防隊의 活用이 있겠습니까만 서울시는 消防署가 있는 한 그 사람들의 範圍가 너무 광범위하면 그것도 내려온 指針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서울시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防護課長 安甲壽;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鞠應好; 李丁煥 委員 말씀하세요.

○李丁煥 委員; 지금 條例가 다음에 다시 成案을 해서 議論을 하자는 意見에 委員들이 大部分 同意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條例案을 보면 지난 53回 臨時會에서 條例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意味에서 한달 이상 동안 우리 委員들이 이 條例案을 檢討할 時間的인 餘裕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問題點이, 浮刻된 點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消防本部 立場에서 봤을 때 이 條例案을 7月 1日에 施行을 하더라도 아무런 問題點이 없다고 委員長님 質疑에 答辯을 하셨는데 附則에 보면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런 條項을 넣으셨고, 또 附則 5項에 보면 7月 1日부터 改正되는 消防法 以前에 이 條例가 通過될 것으로 보고 附則條項을 애써 넣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봤을 때는 消防本部側으로 봐서 이 消防法이 改正 發效되기 이전이더라도 빨리 이 義勇消防隊 條例案을 通過시켜야 되겠다는 意志가 있었다는 것이 이 附則에 나와 있는 데 지금 또 委員長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條例는 7

月 1日부터 適用을 해도 아무 問題點도 없다고 答辯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消防本部가 어떠한 主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여기서 이런 霧圍氣니까 이렇게 對答하고 또 이것을 成案할 때는 7月 1日되기 이전이더라도 빨리 條例를 通過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意志가 있어서 애써 附則條項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條例案을 制定을 해서 한달 前에 냈는데, 그렇게 通過시켜야 되겠다 하는 意志가 없이 執行部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痛歎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 갑니다.

○委員長 鞠廳好; 맞아요. 李丁煥 委員님이 말씀해 주신 內容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通過가 돼서 公布가 되면 消防法 發效되기 前이라도 우리 條例를 活用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네.

○委員長 鞠廳好; 그러나 慎重을 기해서 나중에 만들어서 7月 1日부터 發效해도 消防業務에 큰 支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防護課長 安甲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鞠廳好; 그러니까 다시 만드세요. 다시 만드는데 專門委員이 檢討한 事項 中에 아까 얘기한 대로 細細한 事項은 條例案에서 빼시고, 專門委員 檢討한 것은 우리 專門委員과 協議를 해 보시는 데, 단, 내 個人的 생각으로는 우리 專門委員은 義勇消防隊員에 대한 報酬를 우리 一般職 公務員의 總額 報酬에다가 같이 連結시켜서 主張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市民負擔의 側面에서 보아서는 그렇게 一致시킬 必要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常勤이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을 버리고 生業을 여기다 한다면 手當이다 보너스다

뭐다 全部 合한 것을 準則으로 해서 賞與를 받을 적에도 計算해 주는 것 아닙니까, 一般公務員들은. 義勇消防隊는 本俸에 基準해서 70%씩 手當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一理가 있다고 봐요. 總額基準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 專門委員이 意見은 參考로 해서 檢討는 해보시되, 그쪽 原案이 一理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徽章이니 깃발이니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은 一切 條例案에다 넣지 마세요.

(「委員長님, 意見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한번 더 하시지요.

○李丁煥 委員; 앞으로 條例를 새로 試案을 만드는데요. 그때에 또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條例案 만드는데 反映을 해주셨으면 하는 部分을 좀 指摘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條例案 18條에 보면 물론 服制에 關한 規定인데 그런 細部 規定을 施行規則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全적으로 同意하면서, 義勇消防隊員들이 거의 消防公務員과 거의 類似的한 服裝을 하고 다님으로 해서 혹시나 어떤 不條理의 要因이 생기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正式公務員 詐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不條理 誘發이 될 수 있는 것을 根絶 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重罰을 내릴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條에 보면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指摘을 해주셨습니까, 2項에 보면은 "療養補償費는 消防公務員 報酬規程에 規定된 地方消防士 4號俸 俸給 年額 80%의 5배에 相當하는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이렇게 明示되어 있는데 實質적으로 義勇消防隊員이 火災 鎮壓 現場에서 重傷을 입어서 4號俸 金額 80%의 5배가 具體적으로 金額으로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뽑아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治療費가 나왔을때 정말로 獻身的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消防業務를 하다가 다쳤는데, 重傷을 입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自費로 治療를 하시오 한다는 것은 相當히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獻身的인 鎮火作業을 하다가 負傷을 當한 것이라면 正式消防公務員과 똑같은 2년에 該當하는 規定으로 治療費를 補償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合當하고 合理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反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오늘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은 留保하고, 다음 會期에 다시 成案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關係公務員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6分 散會)

---

○出席委員

鞠應好 文一權 朴禧柱

李永鎬 白中元 李丁煥

尹鎮商 吳基昌 金泰雄

趙熙濬 姜晶錫 金容一

李迎春 韓仁洙

○專門委員

俞炳敦

○出席公務員

消防行政課長 李成珪  
防護課長 安甲壽